

1994년도 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1993. 12. 8 (수)

도 시 위 원 회

1. 도시국 소관 회부 예산안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93 당 초 예 산	비 교 증 감
계	18,639,269	12,351,693	6,287,576 (50.9 %)
일 반 회 계	15,256,669	11,946,693	3,309,976 (27.7 %)
특 별 회 계	3,382,600	405,000	2,977,600 (735.2 %)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 9 3 당 초 예 산	비교 증감
계	15,256,669	11,946,693	3,309,976 (27.7 %)
일 반 행 정 비	148,380	57,536	90,844 (157.8 %)
지 역 개 발 비	15,108,289	11,889,157	3,219,132 (27 %)

○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9 3 당 초 예 산	증 감
계	3,382,600	405,000	2,977,600
주 차 장	505,000	405,000	100,000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97,600	—	797,600
장림유수지이설및 공유수면매립사업	2,080,000	—	2,080,000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3. 11. 24

나. 회부일자 : '93. 11.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93. 12. 7) 상정

제2차 도시위원회('93. 12. 8) 의결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계별	과	별	'94 예 산 액	구 성 비 (%)	'93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총 계			18,639,269	100	12,351,693	6,287,576
일반회계	소	계	15,256,669	100	11,946,693	3,309,976
	지	역 교 통 과	96,182	0.6	121,385	△25,203
	도	시 개 발 과	46,724	0.3	61,028	△14,304
	건	축 과	815,542	5.3	93,220	722,322
	건	설 과	14,139,779	92.8	11,534,642	2,605,137
	지	적 과	158,442	1	136,418	22,024
특별회계	소	계	3,382,600	100	405,000	2,977,600
	지	역 교 통 과	505,000	15	405,000	100,000
	도	시 개 발 과	2,080,000	61.5	—	2,080,000
	건	축 과	797,600	23.5	—	797,600

나. 회계별 성질별 주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계	인 건 비	기 본 경 상 비	사 업 비		
				소 계	경 상 사 업	투 자 사 업
계	15,256,669	459,768	187,920	14,608,981	731,981	13,877,000
지 역 교 통 과	96,182	—	19,718	76,464	18,464	58,000
도 시 개 발 과	46,724	—	17,798	28,926	28,926	
건 축 과	815,542	50,767	23,210	741,565	33,565	708,000
건 설 과	14,139,779	405,001	104,790	13,625,988	514,988	13,111,000
지 적 과	158,442	—	22,404	136,038	136,038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계	인 건 비	기 본 경 상 비	사 업 비			예 비 비
				소 계	경 상 사 업	투 자 사 업	
계	3,382,600	70,872	868,983	2,019,936	30,000	1,989,936	422,809
주 차 장	505,000	70,872	122,223	30,000	30,000		281,905
주 거 환 경 개 선	797,600	—	742,000	55,600		55,600	
장 림 유 수 지 이 설	2,080,000	—	4,760	1,934,336		1,934,336	140,90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위원회 수당지급은 관련법률과 조례 등에 지급 명문화 규정이 없는데 예산에 편성(동지가 심의위원회)
-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에 보조역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있어 대상 업무량이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음(지적과 일용 인부)

-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 설치에 있어 현실적으로 성과분석이 미흡하고 일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도 예산과다편성(교통분야 시책사업)
- 행정처분청에서 허가한 개인의 수익적 사업장의 위법행위는 피허가자의 책임에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수반되는 재정부담도 피허가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편성 집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토지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수수료)
- 기본적 경상비, 경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92-'93년 사무감사시 계획 목표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여 과다불용액으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음(광고물 행정대집행 수수료)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08백만원 계상되어 전체 세입의 구성비가 88.8%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회계원칙에 불합리하므로 매각수입 등으로 자체적으로 세입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일반회계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전년도 예산(본예산, 1차 추경)에 편성된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76,000m 53,20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우리구 관내 주차금지 구역선 136개소 35,325m, 허용 구역선 14개소 2,500m 현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30,000m 30,000천원은 계획 과다 설정하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전체의 55.8%인 281백만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교통편의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예산의 주요 문제점

- 경상사업,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의 근간으로 하여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도로개설(확정 정비) 하수구 설치(정비)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교통난 해소, 지역주민의 편의확대 측면에서 조기착공, 완공은 바람직하나 '91-'93 사업계획 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매년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 사고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지역 개발사업 28건 13,961백만원 계상되어 있어 관련 부서의 한정된 조직 기능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내 사업 완공이 가능한 사업계획량을 조정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요청됨.

6. 심사보고요지(삭감액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위 원 회 삭 감 액	조 정 예 산 액
총 계		18,639,269	100,408	18,538,861
일반회계	소 계	15,256,669	73,808	15,182,861
	일 반 행 정 비	148,380	—	148,380
	지 역 개 발 비	15,108,289	73,808	15,034,481
특별회계	소 계	3,382,600	26,600	3,356,000
	주 차 장	505,000	26,600	478,400
	주거환경개선사업	797,600	—	797,600
	장림유수지이설및 공유수면매립사업	2,080,000	—	2,080,000

7. 심사결과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원안의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요지

사하경찰서~장림하수처리장 간 보도정비 공사(사업비 4억2천)는 현재 주민통행이 한적할 뿐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문제에 있어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 위치 선정이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교통행정시책 사업비 삭감부분에 있어 대구민 주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액 51,500천원의 삭감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첨부 : 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액 삭감요구내역